2020년
암 진단부터 치료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National Cancer Survivorship Center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

1. 국가암검진제도
2. 보편적 지원제도
3. 건강관리 지원제도
4.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5. 생계 지원제도
6. 돌봄 지원제도
7. 사회복귀 지원제도
8. 소아청소년(암환자) 지원제도
9. 장애인 지원제도
10. 특수상황에 따른 지원제도
11. 기타 지원제도
12. 말기암 환자를 위한 제도

- 본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해당 자료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공적지원제도나 민간기관 지원 사업은 각 의료기관 내 사회사업팀 등에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국립암센터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목 차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

Ⅰ 국가암검진제도 1

1. 국가암검진사업 ····· 3

Ⅱ 보편적 지원제도 5

1.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7
2. 본인부담상한제 ····· 8

Ⅲ 건강관리 지원제도 11

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13
2. 금연지원센터 ····· 15
3. 정신건강복지센터 ····· 16
4. 자살예방센터 ····· 17
5.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 18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19

Ⅳ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21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23
2. 긴급지원제도: 의료지원 ····· 28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31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34

Ⅴ 생계 지원제도 3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41
2. 긴급복지 지원제도 ····· 46

Ⅵ 돌봄 지원제도 49

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51
2.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53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54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59
5. 통합사례관리사업 ····· 63

Ⅶ 사회복귀 지원제도 65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67
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 69
3. 자활근로 ····· 73
4.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75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77
6. HRD-Net 직업훈련포털 ····· 79

Ⅷ 소아청소년(암환자) 지원제도 81

1. 재정 지원제도 ····· 83
2. 사회복귀지원 제도 ····· 90
3. 기타 지원기관 소개 ····· 96
4.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 99

IX 장애인 지원제도 101

1. 장애등록 및 혜택 ····· 103
2.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 106
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108

X 특수상황에 따른 지원제도 111

1. 석면피해구제제도 ····· 113
2. 원폭피해자 지원제도 ····· 113
3.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 113

XI 기타 지원제도 115

1.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 117
2. 기초연금 ····· 118
3.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 120
4.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 122
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자체별 상이) ····· 125
6. 119 안심콜 서비스 ····· 126
7.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128
8.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 129
9. 에너지 바우처 ····· 131
10. 건강가정지원센터 ····· 132
11. 가족돌봄휴직/휴가 ····· 133
1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135
13.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 136

XII 말기암 환자를 위한 제도 139

1.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41
2. 호스피스·완화의료 ····· 143

Ⅰ. 국가암검진제도

-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암검진제도]

국가암검진사업

우리나라는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별다른 위험요인이 없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암 검진은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상 암종	검진 대상	검진 방법	검진 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2년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이나 B형 바이러스 항원 양성자, C형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간초음파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1년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검사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 세포검사	2년
폐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2년

Ⅱ. 보편적 지원제도

-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보편적 지원제도]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 대상질환

-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2. 신청절차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신청 시에는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3. 주요내용

- 암 진단(등록)일로부터 5년간 요양급여 중 법정본인부담률 5% 적용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식대는 50% 본인부담)
- 기타 질환은 문의처로 문의

〈영수증〉

<table>
<tr><th>항목</th><th colspan="3">급여</th><th colspan="2">③ 비급여</th></tr>
<tr><td rowspan="2"></td><td colspan="2">일부본인부담</td><td rowspan="2">② 전액 본인 부담</td><td>선택 진료료</td><td>선택 진료료 이외</td></tr>
<tr><td>① 본인부담 5%부담</td><td>공단부담</td><td></td><td></td></tr>
<tr><td></td><td colspan="3"></td><td></td><td></td></tr>
<tr><td></td><td colspan="3"></td><td></td><td></td></tr>
</table>

***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 진료비 = ①+②+③**

4. 문 의

- 진료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편적 지원제도]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 제외)

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 소득분위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120일 이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 (진료일 기준)

2. 적용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582만원(2019년 5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외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으로 청구
- **상한제 사후급여**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20년 기준 582만원)을 넘을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X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9.12.31. 발표) : 0.4%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Ⅲ. 건강관리 지원제도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금연지원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예방센터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강관리 지원제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받은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1. 대상자

- 필수대상 :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권고대상 :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매월 1회 지원 (치료비로 월 3,500원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지원함)
- 리콜·리마인더 서비스 :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해 개인별 진료 정보(예약일, 누락치료, 자기 혈압·혈당 조절상태 등)를 전화, 전자우편, SMS 등을 통해 제공
- 고위험군 집중관리 서비스 : 고위험군 등록, 추적관리 및 개인별 맞춤식 교육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

3. 신청절차

- 참여를 희망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등록·관리 참여 동의서 작성 후 참여 가능

4. 문 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043-719-7441)

CHECK CHECK

본 제도가 이용 가능한 병의원 및 약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 스티커가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 받을 수 있음.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 필요

병의원 방문 시 준비 사항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받기 전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 후 사업에 참여

[건강관리 지원제도]

금연지원센터

금연지원센터는 스스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상담 및 보조제 지원 등)를 제공함으로서 금연 성공을 돕고자 노력합니다.

1. 서비스 안내

① 금연상담

- 금연상담전화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내방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
-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로는 상담(개별 및 그룹 코칭), 금연행동강화 물품 및 금연교육키트 지원,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등) 지원

② 단기 금연캠프

- 금연캠프란 4박 5일간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치료형 금연 프로그램이며, 금연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하고 참여
- 캠프를 통해 건강 상태 평가, 금연 목표 설정, 금연 프로그램 및 금연 유지 계획 설정 등의 서비스 제공
- 캠프 이후 6개월 간 사후관리 제공

③ 보건소 금연클리닉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6개월 동안 금연상담서비스, CO 또는 코티닌 측정, 금연보조제, 행동요법, 금연치료 서비스 등 지원

2. 전화상담 및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 금연 상담전화(평일 09:00~22:00 / 공휴일 09:00~18:00)(☎ 1544-9030)
-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길라잡이 : http://www.nosmokeguide.go.kr
- 금연두드림 : 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각 지역관할 보건소 금연 클리닉

[건강관리 지원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알코올 의존 등과 관련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대상자들에게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합니다.

1. 서비스 안내

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검진 및 상담

- 스트레스, 우울, 불안, 알코올 의존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병원 연계
- 개별 상황에 맞춘 상담 및 교육을 시행하여, 정신건강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여 연계

②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 지역 내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투약/치료관리를 시행하고, 지역사회 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위기, 응급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위기개입이 이뤄짐.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2. 전화상담 및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24시간)(☎ 1577-0199)
- 지역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 지원제도]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생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살문제의 발 빠른 개입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살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안내

①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자살 생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화 또는 온라인,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서비스 제공

② 치료비지원 서비스

- 우울감과 자살 생각 등의 어려움으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등 지원

③ 자살유가족지원 서비스

-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슬픔을 나누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 및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회복에 도움을 제공

2. 전화상담 및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24시간)(☎ 1393)
- 생명의 전화(24시간)(☎ 1588-9191)
- 지역별 광역 자살예방센터 및 구군별 자살예방센터
- 중앙심리부검센터 및 따뜻한 작별 : http://www.psyauto.or.kr/
  http://www.warmdays.co.kr/

[건강관리 지원제도]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정신적·심리적 치료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합니다.

1. 서비스 안내

① 응급의학과 : 자살시도자 확인, 신체적 평가와 치료, 초기 안정화, 사례관리팀으로 의뢰

②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적 진단과 평가, 필요시 외래 및 입원 치료 연결

② 사례관리팀

- 초기평가 및 대응 및 단기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기관,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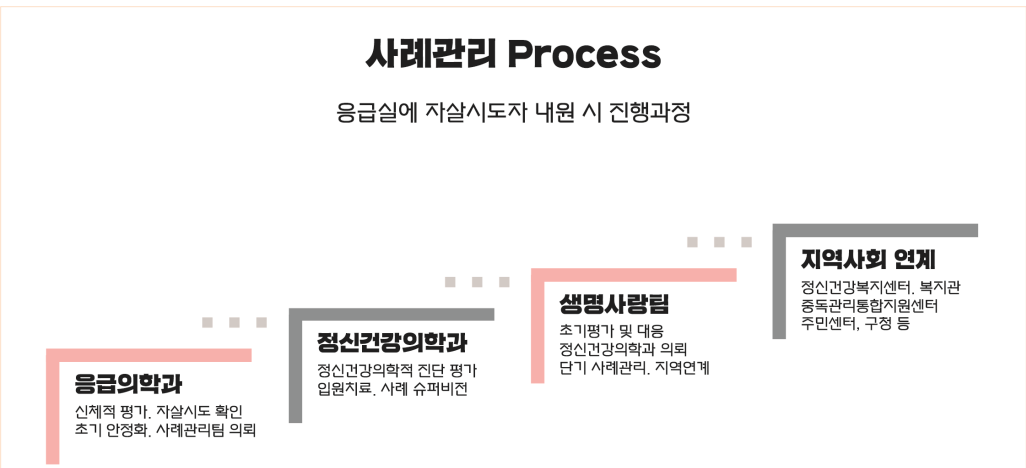

2. 전화상담 및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24시간)(☎ 1577-0199)
- 중앙자살예방센터 : www.spckorea.or.kr
- 전국 60여개 기관의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건강관리 지원제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중독문제를 관리하며,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 등의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를 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상담과 치료, 재활을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1. 서비스 안내

①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 중독(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문제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심층 사정 평가를 시행하고,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② 사례관리 서비스

- 중독문제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 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 통합적인 사례관리 제공
-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교육 및 모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중독자와 가족 모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서비스 제공

2. 전화상담 및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24시간)(☎ 1577-0199)
- 전국 50개 지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Ⅳ.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긴급지원제도: 의료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1. 대상자

-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9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단, 2020년 국가암검진(비용지원 대상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 암종으로 암을 진단받은 경우(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 건강보험료에 상관없이 당연 선정

  ※ 2021년부터는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정확한 지원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 문의

2.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 동안 매년 등록해야 하며, 각 해당 연도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함)

  ※ 단, 암 치료비 관련 타 법률 · 제도에 의한 국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3. 지원되는 항목

지원항목	지원제외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등) * 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필요	▪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등)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4. 의료비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아래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등록 신청(매년 1회)

① 등록신청서

② 진단서(암으로 진단받은 최종 진단일, 상병코드, 상병명, 확진 여부 반드시 기재)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④ (해당자) 전문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암검진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원신청(수시)

① 지원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

③ 의료비 입금 통장 사본

5. 문 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1.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2.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단, 연도별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함)

①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전액본인부담금 포함)

3. 지원되는 항목

지원항목	지원제외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 진료비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금 등 ▪ 희귀의약품 구매비*: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내 약품 등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 등을 통한 이식·조정 관련 비용)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필요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등)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4. 의료비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아래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등록 신청(매년 1회)

① 등록신청서

② 진단서(암으로 진단받은 최종 진단일, 상병코드, 상병명, 확진여부 반드시 기재)

③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④ (해당자) 전문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 지원신청(수시)

① 지원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

③ 의료비 입금 통장 사본

5. 문 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성인 암환자- 폐암 환자

1. 대상자

① 만18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2020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에 적합한 원발성 폐암 환자

② 만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해당자) 중 원발성 폐암 환자

2.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금액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포함)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기간	폐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

3. 구비서류 (※아래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등록신청(매년 1회)

① 등록신청서

② 진단서(암으로 진단받은 최종 진단일, 상병코드, 상병명, 확진여부 반드시 기재)

③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④ (해당자) 전문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 지원신청(수시)

① 지원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

③ 의료비 입금 통장 사본

4. 문 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1. 대상자

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②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제외. (다만, 진단서 등을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③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지원 가능

④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차액 지원 가능

⑤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가능

2.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② **재산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백만 원)	188	118	101

③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3. 지원내용

-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 급여화 된 상급병실 이용의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불가피한 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감염 및 전염에 해당하는 경우 일수 제한 없음) 선별급여로 지원

4. 구비서류

기본서류	①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② 진단서, 의료비 산출내역서, 영수증 등
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확인(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행방불명신고접수증 등) ▪ 소득, 취업·퇴직 확인(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확인(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휴·폐업확인서 등) ▪ 재산확인(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보험가입증명서 등) ▪ 부채증빙자료(은행 대출 내역, 카드명세서 등)

5.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가능
-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 기관

6.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선지급 사후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지원비용 환수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CHECK CHECK

지원비용 환수대상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아니하였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③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집행상의 오류 등)

- 지원 결정은 신청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소요되며, 각 시군구청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지원 결정 전에 퇴원 시 지원이 불가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일 때 지원하지 않음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 가능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국가에서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대상자

①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②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환자)

③ 18세 미만인 자(만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① 차상위수급자의 소득인정액 2020년 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에 반영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및 배우자
-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다음 소득 미만일 경우 부양 능력 없음으로 판정

(단위: 원/월)

		부양의무자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차상위 대상자 수	1인(120%)	2,108,633	3,590,376	4,644,693	5,699,009	6,753,326	7,807,642
	2인(130%)	2,284,353	3,889,574	5,031,751	6,173,927	7,316,103	8,458,279
	3인(140%)	2,460,072	4,188,772	5,418,808	6,648,844	7,878,880	9,108,916
	4인(150%)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5인(160%)	2,811,511	4,787,168	6,192,924	7,598,679	9,004,434	10,410,189

3. 지원범위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40%

※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식대는 본인부담

※ 상급종합병원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 100분의 40으로,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인실 및 3인실의 경우 각 100분의 40, 100분의 30으로 인하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4. 병원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 상 최종진단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고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은 불인정
만성질환자	▪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병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치료내용에는 만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기타	▪ 소견서, 확인서는 진단서를 대체할 수 없음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 기초수급 신청 탈락 후 차상위 만성질환으로 신규신청 하는 경우에만 인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 및 중증치매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는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함

5. 문 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자

- 모든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환자 및 가구원(*3번 가구원 범위 참고)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원 결정

※ 실손보험 보험금이나 상해 관련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상)금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험(상)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지원

2. 지원조건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또는 100% 초과 시 개별 심사 통해 선정
  - 가구원수(동일 주민등록주소)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

소득 구분		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발생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의 15% 초과 발생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의 20% 초과 발생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

※ 본인부담액 :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한 입원, 항암치료(외래, 약국 포함) 비용

- 재산 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재산과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제외

3. 가구원의 범위

동일 주소지 가구원 (2촌 이내) ▶ 주소지를 달리하는 가구원 포함 (배우자, 25세 미만 미혼 자녀 등) ▶ 피부양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인 경우 직장가입자 추가 (2촌 이내) ▶ 가구원수 결정

예) 65세 독거 환자가 24세의 미혼 자녀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도 가구원으로 포함

4. 지원금액

- 연간 2천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CHECK CHECK

지원금액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제외항목⊖국가·지자체지원금⊕민간보험금)} × 50%

※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

5. 지원내용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
지원항목	- 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양·한방 협진료 포함) - 의료비 관련 약제비(의사소견서 첨부) - 장기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공여자(뇌사자 포함) 진료비용(장기이식증빙서류 등 첨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금액을 우선 지원
지원 제외 항목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료, 합방첩약, 요양병원,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6. 신청방법

신청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유일 포함)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급신청
자격심사	가구원의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발생 수준, 진료 내역 등 심사
개별심사	지역별 실무위원회 심의 (의료비 과다지출 등)
지급	지급계좌(신청인 또는 의료기관 등)로 입금 조치

7.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자 (공통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1부
해당자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기초생활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인 경우)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의사소견서 1부 등

8. 기타 유의 사항

- 최종 확정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 긴급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 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지원금액 산정하여 여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 환자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구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원단위절상)		
			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933,000	32,110	7,060	33,300
	2인	1,520,000	52,310	11,070	52,600
	3인	1,938,000	66,670	22,600	66,850
	4인	2,396,000	82,440	50,930	83,250
	5인 이상	2,823,000	97,130	81,380	98,21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	1인	1,260,000	43,350	9,800	44,220
	2인	2,096,000	72,130	31,500	72,910
	3인	2,721,000	93,560	73,960	94,610
	4인	3,350,000	115,300	107,530	116,530
	5인 이상	3,940,000	135,600	129,930	137,250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85% 이하)	1인	1,520,000	52,310	11,070	52,600
	2인	2,566,000	88,310	63,780	89,180
	3인	3,310,000	113,920	107,530	115,300
	4인	4,039,000	138,990	134,280	140,580
	5인 이상	4,797,000	165,070	166,370	166,900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100% 이하)	1인	1,764,000	60,680	13,990	61,260
	2인	2,994,000	103,050	93,350	104,040
	3인	3,891,000	133,900	128,090	135,600
	4인	4,797,000	165,070	166,370	166,900
	5인 이상	5,669,000	195,110	203,130	198,310

※ 참고 1)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2)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건강보험료: 산정보험료 기준(본인부담보험료만 적용)
-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보험료 기준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4)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9.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V. 생계 지원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이전의 통합급여와 달리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에 차등을 둔 "맞춤형급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급여별 기준금액 차이
    - 생계·주거·교육 급여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의료급여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9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할 때마다 7인 가구, 6인 가구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 지원내용 : 각 가구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① 의료급여

- 근로능력평가,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주택 조사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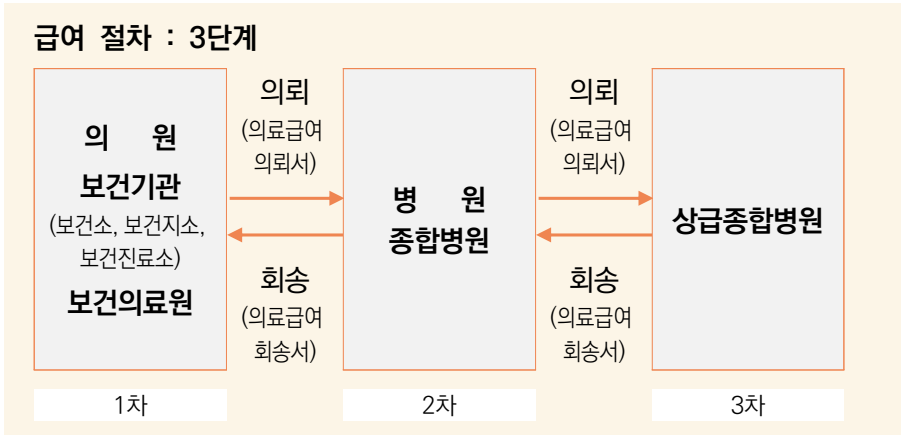

- 병원 시스템에 의하여 의료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기준만큼 차감돼서 청구됨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보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② 생계급여

- 근로능력평가,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주택 조사함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0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A의 30% 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위 해당 생계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③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을 지원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연4% 적용)를 지원
- 금융재산, 주택 조사함 / 근로능력평가, 부양의무자 조사 안함

〈각각 주거급여 최대 수급금액〉

(단위 : 원)

주거급여 수급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7인 가구
서울	266,000	302,000	359,000	415,000	429,000	504,000
경기, 인천	225,000	252,000	302,000	351,000	365,000	430,000
광역시, 세종	179,000	198,000	236,000	274,000	285,000	331,000
그 외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정도(경·중·대보수로 구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④ 교육급여

- 금융재산 조사함. 그러나 근로능력평가, 부양의무자, 주택 조사는 안함

대상	지원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⑤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급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구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또는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생계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대상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한 의료지원 가능)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음에도 계속적인 실직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소득 합산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75%)	1,317,896원	2,243,985원	2,902,933원	3,561,881원	4,220,828원	4,879,776원

-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일 경우(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원/월)

<table>
<tr><th>구분</th><th>지원내용</th><th>최대횟수</th></tr>
<tr><td>생계지원</td><td>
<table>
<tr><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r>
<tr><td>454,900</td><td>774,700</td><td>1,002,400</td><td>1,230,000</td><td>1,457,500</td><td>1,685,000</td></tr>
</table>
</td><td>6회</td></tr>
<tr><td>의료지원</td><td>300만원 이내</td><td>2회</td></tr>
<tr><td>주거지원</td><td>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제공 (원/월)
<table>
<tr><th>가구구성원 / 지역</th><th>1~2인</th><th>3~4인</th><th>5~6인</th></tr>
<tr><td>대도시</td><td>387,200</td><td>643,200</td><td>848,600</td></tr>
<tr><td>중소도시</td><td>290,300</td><td>422,900</td><td>557,400</td></tr>
<tr><td>농어촌</td><td>183,400</td><td>243,200</td><td>320,300</td></tr>
</table>
</td><td>12회</td></tr>
<tr><td>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td><td>(원/월)
<table>
<tr><th>입소자수</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r>
<tr><td>지원금액</td><td>535,900</td><td>914,200</td><td>1,182,900</td><td>1,450,500</td><td>1,719,200</td><td>1,987,700</td></tr>
</table>
</td><td>6회</td></tr>
<tr><td>교육지원</td><td>(단위: 원)
<table>
<tr><th>구분</th><th>초등학생</th><th>중학생</th><th>고등학생</th></tr>
<tr><td>지원금액</td><td>221,600</td><td>352,700</td><td>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td></tr>
</table>
※ 주거지원 (최대 12개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td><td>2회
(4회※)</td></tr>
<tr><td>연료비지원</td><td>98,000원(10월~3월/월)</td><td>6회</td></tr>
<tr><td>해산비지원</td><td>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td><td>1회</td></tr>
<tr><td>장제비지원</td><td>80만원</td><td>1회</td></tr>
<tr><td>전기요금지원</td><td>50만원 이내</td><td>1회</td></tr>
<tr><td>단체 등 연계지원</td><td>▪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td><td>횟수제한 없음</td></tr>
</table>

4. 문 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VI. 돌봄 지원제도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통합사례관리사업

[돌봄 지원제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자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보조가 주 목적인 경우는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 권고)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단, 위에 해당하더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선정 지양,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제외 대상: ① 국고 지원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 서비스 불가, 단, 입원일과 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2.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시간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제공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48,000원	월 348,0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 의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27,120원	월 20,88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91,500원	월 379,760원	월 11,740원
	생계·의료급여 의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68,010원	월 23,49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580,000원	월 580,000원	면제

3. 이용가능 서비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4.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5. 문 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돌봄 지원제도]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암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암환자의 건강문제 확인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대상자

- 가정에 있는 모든 암환자(치료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완치자) 중 가정방문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구

2. 주요 서비스 내용

- 방문간호 및 건강교육, 상담, 영양, 운동관리
- 암관리 소모품 및 영양제 지원
- 말기암환자 가정간호 연계
- 호스피스 단체 연계로 영적간호 제공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계 등
-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서비스 절차

보건소에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보건소의 사실 조사 및 심사 ▶ 보건소의 서비스 여부 결정 ▶ 보건소 서비스 제공

4.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전화 신청

5. 문 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돌봄 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구 분	질 병 명	질병코드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치매	F00-03
	알츠하이머병	G30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등)	I60-69
	파킨슨 질환	G20-23
	중풍 후유증, 진전	U23.4, R25.1

2.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공단지사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능)으로 신청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3.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시)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지역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될 수 있음

4. 등급판정 기준

상 태	수 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75~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60~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51-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5. 등급판정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지,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함.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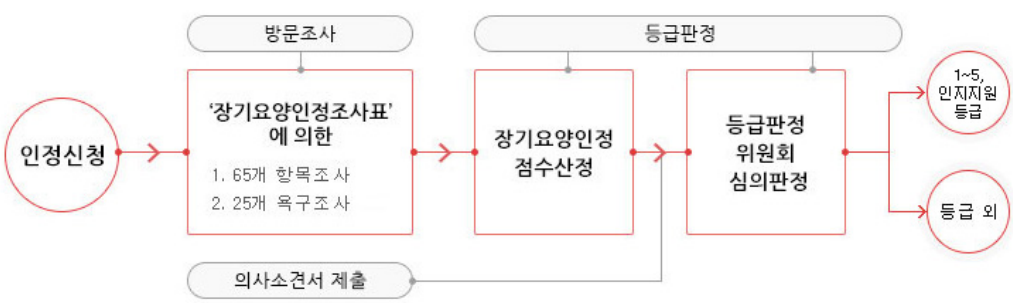

6. 결과통지

- 필수서류인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7. 서비스 이용

- 수급자가 되면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적절한 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

구 분	내 용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제공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현금 지급

8. 갱신 신청 및 등급 변경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과 변경 신청의 절차는 인정절차와 같음

9.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Q&A

1.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는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급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 부담(일반 대상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구분	1일 금액	월(30일) 금액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반(20%)	경감(40%)	경감(60%)
노인요양 시설	1등급	70,990	2,129,700	425,940	255,560	170,370
	2등급	65,870	1,976,100	395,220	237,130	158,080
	3~5등급	60,740	1,822,200	364,440	218,660	145,77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등급	62,230	1,866,900	373,380	224,020	149,350
	2등급	57,750	1,732,600	346,600	207,900	138,600
	3~5등급	53,230	1,596,900	319,380	191,620	127,750

※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

② 재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일반 대상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번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구분	월 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경감(40%)	경감(60%)
1등급	1,498,300	224,740	134,840	89,59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0	79,900
3등급	1,276,300	191,440	114,860	76,57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0	70,390
5등급	1,007,200	151,080	90,640	60,43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0	33,990

③ 특별현금급여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

3. 복지용구급여는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연 160만원 내에서 구입,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돌봄 지원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합니다.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그 외 유사한 재가서비스)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2. 서비스 제공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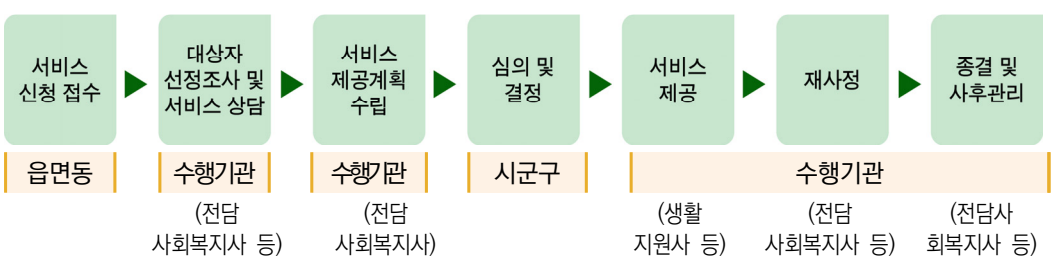

3. 서비스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① 중점돌봄군

-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② 일반돌봄군

- 사회적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
-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 서비스 한시적 제공 가능

③ 특화 서비스 대상

- 별도의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은둔형/우울형 노인

④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기존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4. 서비스 내용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데이터 확인 · 점검 ▪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체험여행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면·동에서 우선 실시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지원 ▪ 식료품지원 ▪ 후원금지원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지원 ▪ 건강보조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5. 서비스 제공기간

- 시·군·구 서비스 승인 다음 날부터 1년
-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다시 결정함

6. 서비스 신청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7. 문 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돌봄 지원제도]

통합사례관리사업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이 가능한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 지원이 가능한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 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2. 지원내용

- 대상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전반을 지원
- 공공 서비스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복지서비스 지원

※ 1가구당 생활지원비, 의료비 및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최대 50만원 한도 내 현물 서비스 지원

- 민간 서비스는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3. 통합사례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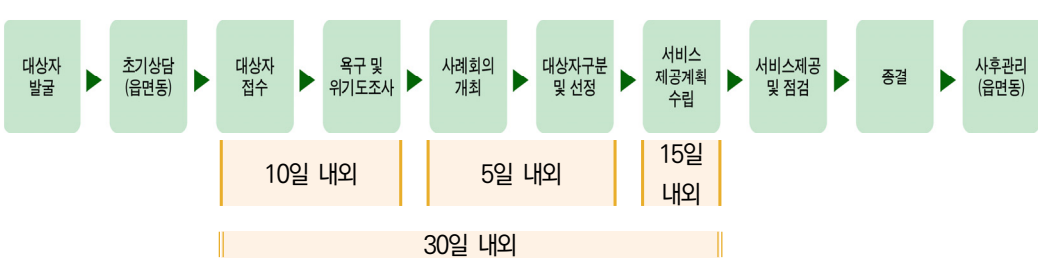

4. 신청방법

- 민간기관 사례관리 담당, 지역주민, 동 사례관리담당 등이 대상자 발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의뢰
- 대상자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 등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대상가구 초기상담 실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례관리 요청하면 욕구 및 위기도 조사와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 구분 및 선정

5. 문 의

- 구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 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복지담당공무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Ⅶ. 사회복귀 지원제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 자활근로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HRD-Net 직업훈련포털

[사회복귀 지원제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1. 대상자

- 세부사업별로 지원 대상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참고

2. 지원내용

- 구인구직, 복지상담, 신용회복 등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이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 서비스 기관과 복지 서비스 기관 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

- 실업급여, 취업성공 패키지,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 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복지종합 상담, 복지급여 신청, 희망케어센터 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
-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 지원 서비스 제공

3. 신청절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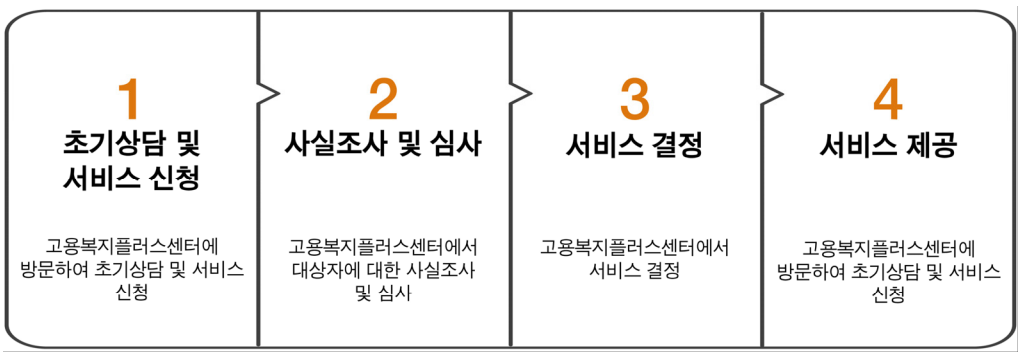

4. 문 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plus.go.kr) 통해 관할 센터

[사회복귀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자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

① 취업성공패키지 I (만 18세~만 69세)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니트족, 여성가장, 장애인, 미혼모·한부모 등

② 취업성공패키지 II (청·장년층)

- 청년층(만 18세~34세 이하)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기타 사업소득자 등
- 중·장년층(만35세~69세 이하)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④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이하인 사업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 지급 ▪ Ⅰ유형 : 15~25만원 지급 ▪ Ⅱ유형 : 15~20만원 지급
▼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지원대상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 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원(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원, 6개월 근속 시 40만원, 12개월 근속 시 8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사항

-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 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 취업지원 '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 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 취(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신청 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 재정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 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취·창업자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대학·대학원 재학생
    -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허용
    - 그 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4. 신청방법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http://www.work.go.kr/pkg/index.do

5.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회복귀 지원제도]

자활근로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1. 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
-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근로 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CHECK CHECK

자활근로사업단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단 등과 같이 기술습득을 통해 취·창업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전국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음

- 시장진입형 : 1일 임금 56,110원
- 복지, 자활도우미 인턴형 : 1일 임금 56,110원
- 사회서비스형 : 1일 임금 49,120원
- 근로유지형 : 1일 임금 28,810원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단,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 근무), 실비(4,000원) 포함

3. 신청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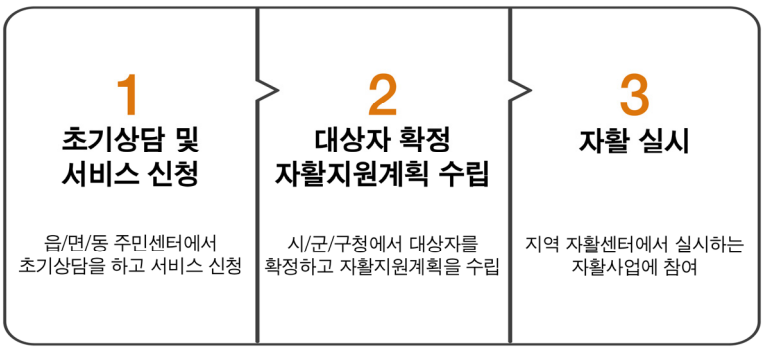

4.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복귀 지원제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1. 대상자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세부 지원내용
직업 상담	▪ 구직자의 취업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인턴기간 3개월 동안 기업에 인턴급여의 일부-월 최대 60만원 지원-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경력단절예방	▪ 여성고용유지지원을 일환으로 경력단절예방상담 컨설팅, 직장적응 복귀지원프로그램 등 여성의 지속적 근로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직장문화개선 교육 및 정보제공, 기업대상 워크숍 등 지원 ▪ 경력단절예방협력망 등 구성

3. 신청방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및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고

4. 문 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또는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

CHECK CHECK

인턴십 지원내용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 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을 지급

[사회복귀 지원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 대상자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만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중 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

2. 지원내용

-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공익활동 지원

CHECK CHECK

공익활동 : 월 27만원의 활동수당 지급(월 30시간 이상)

※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시장형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 제공함.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수익으로 연중 운영
- 인력파견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활동수당은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

3. 신청절차

-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발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를 공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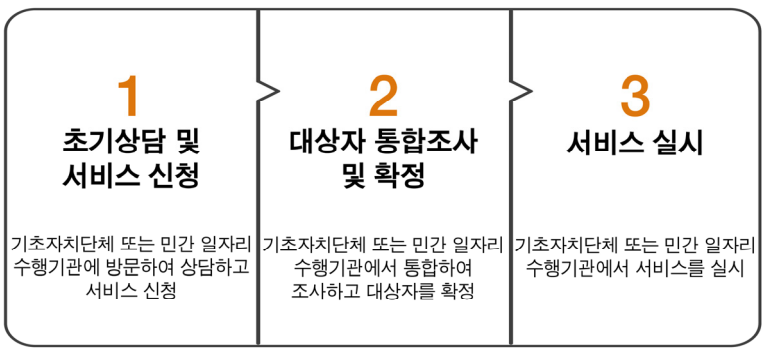

4.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복귀 지원제도]

HRD-Net 직업훈련포털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센터,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훈련생·훈련비용 등 직업능력 개발사업 관련 안정적·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정보와 무료 학습콘텐츠 제공으로 평생학습체제에 적합한 대한민국 대표 직업능력 지식포털입니다.

1. 주요 서비스

- 직업훈련정보
  - 구직자 훈련과정, 근로자 훈련과정, 원격(인터넷, 우편) 훈련과정, 중·장년 특화과정, 동영상 학습 등
- 일자리·직업정보
  - 구인정보, 자격정보, 직업사전, 학과정보 등
- 훈련지원 안내
  - 정부지원사업안내
  - 구직자지원사업
  - 근로자지원사업
  - 정부부처훈련안내

2. 신청방법

- 전화(☎ 1350) 또는 www.hrd.go.kr에서 신청

Ⅷ. 소아청소년(암환자) 지원제도

- 재정 지원제도
- 사회복귀지원제도
- 기타 지원기관 소개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소아청소년(암환자) 지원제도]

재정 지원제도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치료비용 및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 대상자

- 지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2.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2020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9,927,674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 평균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2020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12,566,734	248,100,144	273,383,511	298,666,878	323,950,245	349,233,612	374,653,669	400,073,727

3. 지원금액 및 기간

- 백혈병은 최대 연 3,000만원, 백혈병 외 모든 암종은 최대 연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최대 연 3,000만원)을 지원하며, 환아가 만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신청 가능(지원 기간 동안 매년 등록해야 하며, 해당 연도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함)

4. 문 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아동 입원 진료비 지원

1. 대상자

- 만 15세 이하 아동

2.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3.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가정 양육수당 지원

1. 대상자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 지원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table>
<tr><th colspan="2">양육수당</th><th colspan="2">농어촌 양육수당</th><th colspan="2">장애아동 양육수당</th></tr>
<tr><th>연령(개월)</th><th>금액</th><th>연령(개월)</th><th>금액</th><th>연령(개월)</th><th>금액</th></tr>
<tr><td>0~11개월</td><td>20만원</td><td>0~11개월</td><td>20만원</td><td rowspan="3">0~35개월</td><td rowspan="3">20만원</td></tr>
<tr><td>12~23개월</td><td>15만원</td><td>12~23개월</td><td>17만 7,000원</td></tr>
<tr><td>24~35개월</td><td>10만원</td><td>24~35개월</td><td>15만 6,000원</td></tr>
<tr><td rowspan="2">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td><td rowspan="2">10만원</td><td>36~47개월</td><td>12만 9,000원</td><td rowspan="2">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td><td rowspan="2">10만원</td></tr>
<tr><td>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td><td>10만원</td></tr>
</table>

3.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아동수당

1. 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

2. 지원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원	월 10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월 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원	월 2만원

3. 신청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자

-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구분	지원내용
만 3~5세 누리반	월 47만 8,000원
장애아반 편성 아동	월 47만 8,000원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4.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자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지원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원	월 10만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자

-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8만 259원, 지역 18만 7,654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60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시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아청소년(암환자) 지원제도]

사회복귀지원 제도

소아청소년기의 치료 및 재활을 돕는 여러 지원제도들이 있으며,
소아암 환아의 발달 과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학업, 진로, 정신건강, 직업재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장애와 사이버 학교

CHECK CHECK

특수교육법 상 건강장애란

- 만성 혹은 급성 건강문제로 신체적 장애를 가지거나 제한된 힘, 제한된 활력 혹은 기민도 등으로 인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교육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상태

1. 대상자

-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으로 유급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으로
-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2.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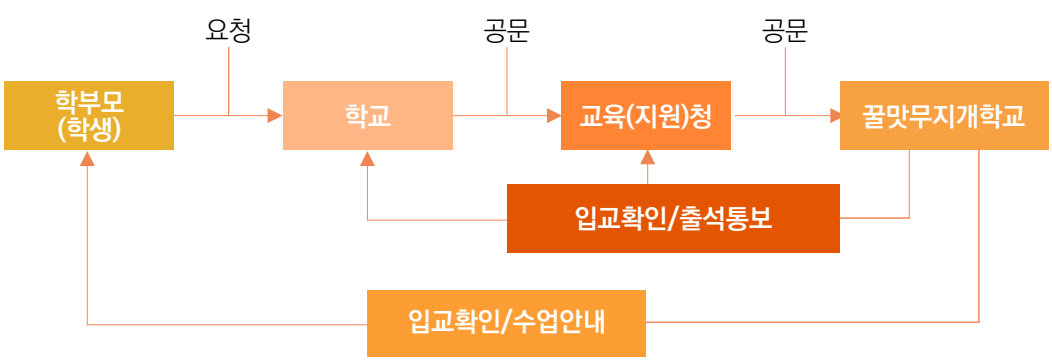

※ 꿀맛 무지개학교는 서울교육청 담당 학교이며, 각 담당 교육청마다 학교 이름이 상이함

4. 문 의

- 각 해당 학교 통하여 교육청 신청

▶ 병원학교

1. 대상자

-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로 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중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

2. 지원내용

-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 학급 형태의 학교로 학업 지원
- 교사 1인이 운영하는 학급 형태이나 여러 학급, 학년의 학생이 함께 공부함

3. 신청방법

- 진료 병원 내 병원학교 운영여부 확인 필요

4. 문 의

- 전국 17개 교육청: https://www.moe.go.kr
- 기타 원격 강의 (한국교육개발원 스마트러닝): http://onlineschool.or.kr/gate.do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1. 대상자

-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2.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도록 지원
- 사례관리, 치료기관 연계, 집단프로그램, 가족교육 등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인 상담(전화, 방문, 내소) 예약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기관 종사자가 직접 의뢰서를 작성하여 접수 가능
- 사례 접수 후 초기 상담과 평가 이후 개인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

4. 문 의

- 지역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아동청소년 사업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청소년 상담

1. 대상자

- 만 9-24세 청소년 및 부모

2. 지원내용

- 일상적 고민, 가족갈등, 교우관계,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및 학업문제, 기타 위기 등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움
- 상담(대면, 전화, 채팅, 게시판), 심리검사, 고민해결 백과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3. 지원방법 및 문의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전국 233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 일반전화: ☎ 1388(또는 ☎ 110)
  - 휴대전화: 지역번호+ ☎ 1388(또는 ☎ 110)
  - 365일 24시간 이용

- 온라인 상담
  - 게시판 상담: www.cyber1388.kr 접속 후 게시판 상담 시행 후 24시간 이내 답변
  - 채팅 상담: www.cyber1388.kr 접속 후 1:1채팅 상담 시행 (pc,모바일 모두 가능)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 상담 시 발생하는 데이터요금은 이용자 부담

- #1388 문자 상담
  - 문자 보내기에서 수신자 번호에 #1388 쓰고 고민 전송
  - 365일 24시간 무료 이용

- #1388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상담 시행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상담 시 발생하는 데이터요금은 이용자 부담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 대상자

-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2.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기타 서비스 등

꿈드림 프로그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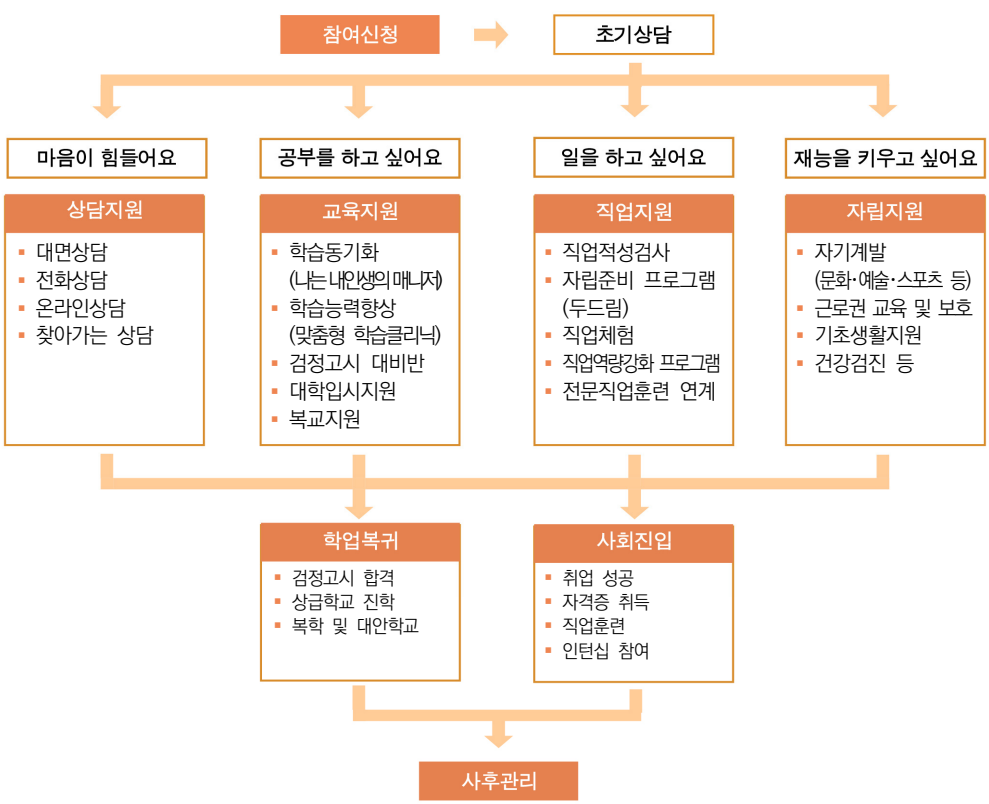

※ 센터에 따라 프로그램이 상이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 꿈 드림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 시군구별 센터 조회 후 전화 상담

4. 문 의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www.kdream.or.kr

▶ 드림스타트

1. 대상자

-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2. 지원내용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후 사례회의(대상자의 욕구와 상황분석) 진행
- 개입영역을 구체화하여, 아동별 필요한 서비스 계획(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가족 분야별) 및 개입계획 수립하여 제공

3. 신청방법

- 개별의뢰
- 행복 e음
- 자진내방
- 관련 기관 의뢰 등

4. 문 의

- 대상 아동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문의
- https://www.dreamstart.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아청소년(암환자) 지원제도]

기타 지원기관 소개

국가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지원기준이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 의료사회복지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1. 대상자

- 만 19세 미만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받아 치료 중인 환자
  (만 19세 미만에 진단받고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 중인 경우, 만 30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140%, 재산 기준 330% 이하 가정의 환아(치료비 기준)

2. 지원내용

- 치료비: 최대 1,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희귀의약품 사용 등 고액의 치료비 발생하는 경우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이식비: 최대 2,000만원
  - 간접치료비(항암치료 중이어야 함)
  - 정기 간접치료비: 최대 480만원(매월 15~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 일시 간접치료비: 최대 100만원
- 재활치료비: 최대 1,000만원
  (보장구 지원, 언어 및 인지학습 치료비, 호르몬 치료비, 기타 시술비 지원)

3. 신청절차

- 재단 지원 신청 → 서류접수 → 재단 담당자의 상담평가 → 운영위원회 및 의료적 평가 → 지원결정 → 지원

4. 문 의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02-745-7674)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1. 대상자

- 만 18세 이전 소아암을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인 만 29세 이하의 자
- 소득 기준 150%, 재산 기준 350% 이하 가정의 환아(치료비 기준)

2. 지원내용

- 치료비: 최대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이식 최대 3,000만원)
- 재활치료비: 최대 1,000만 원
- 사회복지적 치료비

  발달치료비: 연간 최대 300만원 (지역 내 전문치료사가 있는 기관의 치료프로그램 비용)

  치료보조비: 연간 최대 240만원 (교통비, 식비, 약제비, 치료용품구입비 등 치료부대 비용)

3. 신청절차

- 진료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면담 → 서류제출 → 매월 1회 심사 → 진료비지원 결정 통지서 통보

4. 문 의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070-4659-1100)

▶ 한국소아암재단

1. 대상자

- 만 19세 이하 소아암, 백혈병을 진단받은 환아
- 소득 기준 100% , 재산 기준 300% 이하 가정의 환아 (치료비 기준)

2. 지원내용

- 치료비 및 수술비(이식비): 1인당 500만원 ~ 2,000만원
- 외래치료비: 월 25~30만 원 지원(매년 11월, 12월 접수)

3. 신청절차

- 재단 지원 신청 → 서류접수 → 재단 담당자의 경제력 상황 평가 → 진료 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평가 → 지원결정 → 진료비지원 결정 통지서 발송

4. 문 의

- 한국소아암재단(☎ 02-3675-1145)

[소아청소년(암환자) 지원제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사, 영적돌봄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란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문가 팀이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사회/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2. 이용시기

-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과정 중 진단명, 병의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

3. 이용방법

- 환자나 가족이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경우, 외래/입원 주치의 또는 지정의에게 요청을 하면 의료진 평가 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팀에 의뢰

4. 서비스 내용

- 통증 조절 및 증상관리
  - 환자의 통증 등 증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효과적인 조절을 위한 약물 및 비약물 치료
  - 약물 등의 선택은 질환 담당 의료진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 환자와 가족의 선호를 고려하여 결정

- 심리·사회적지지
  -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우울, 스트레스, 고립감 등을 조절
  - 심리치료사 연계, 사회복지사 상담 등 심리적 지지와 사회·경제적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의사소통 지원
  - 환자·가족·의료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복잡한 의료 상황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환자와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
  - 향후 돌봄 방향에 대한 의사 결정 사안이나 어려운 의학적 결정을 앞두고 환자의 현 상태 및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논의 진행

- 퇴원 지원
  - 퇴원 후 응급상황에 대한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
  - 가정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복지 체계 연계

5.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기관명	시범사업 선정일
서울대학교병원	2018. 7. 16.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2018. 7. 16.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19. 1. 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9. 1. 1.
충남대학교병원	2020. 3. 23.

6. 문 의

-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http://hospice.go.kr(☎ 1811-8080)

IX. 장애인 지원제도

- 장애등록 및 혜택
-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장애인 지원제도]

장애등록 및 혜택

1. 대상자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 자폐성, 지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은 사람

2. 등록 절차

- 제출필요서류
  - 사진(3.5cm x 4.5cm)1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의료기관방문 진단서 및 관련 구비서류 발급

3. 장애 종류

<table>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장애범주</th><th>후유장애</th><th>판정시기</th></tr>
<tr><td rowspan="13">신체적 장애</td><td rowspan="6">신체 외부 장애</td><td>뇌병변장애</td><td>뇌의 손상으로 복합적인 장애</td><td rowspan="6">원인 질환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파킨슨병의 경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지체절단/척추고정술/안구적출/청력기관결손/후두전적출술 등은 바로 가능
뇌병변장애: 최소 만1세 이상
언어장애: 최소 만3세 이상</td></tr>
<tr><td>지체장애</td><td>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td></tr>
<tr><td>시각장애</td><td>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td></tr>
<tr><td>청각장애</td><td>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td></tr>
<tr><td>언어장애</td><td>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td></tr>
<tr><td>안면장애</td><td>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td></tr>
<tr><td rowspan="7">신체 내부 장애</td><td>심장장애</td><td>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td><td>최초 진단 후 1년
지속치료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심장이식 수술 직후</td></tr>
<tr><td>호흡기장애</td><td>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td><td rowspan="2">최초 진단 후 1년 경과,
2개월 이상 치료 후 호전 없을 경우
폐/간이식 수술 직후</td></tr>
<tr><td>간장애</td><td>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td></tr>
<tr><td>신장장애</td><td>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td><td>투석치료가 3개월을 경과한 후 신장 이식수술 직후</td></tr>
<tr><td>장루,요루장애</td><td>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td><td>복원수술 불가능시 수술 직후
복원수술 가능 시 수술 1년 후</td></tr>
<tr><td>뇌전증장애</td><td>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td><td>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이 없을 경우</td></tr>
<tr><td rowspan="3">정신적 장애</td><td rowspan="2">발달 장애</td><td>지적장애</td><td>지능지수,사회성숙지수 70 이하인 경우</td><td>최소 만 2세 이상
노인성 치매는 진단 불가</td></tr>
<tr><td>자폐성장애</td><td>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td><td>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최소 만2세 이상)</td></tr>
<tr><td>정신 장애</td><td>정신장애</td><td>정신분열병, 분열형/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td><td>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이 없을 경우</td></tr>
</table>

4. 지원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기 교부, 보장구건강보험급여실시,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 경감, 국·공립문화시설 입장료할인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및 고용지원, 장애인 운전교육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세 면제, 소득공제 추가공제,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 교통비(지하철, 전철, 철도, 항공, 여객선, 고속도로), 통신비 할인 등

5. 문 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장애인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대상자

① **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음)

②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종전 3~6급)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③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2. 지원금액

① 장애인연금(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기초급여 (만 18~64세)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00,000원 - 차상위초과 : 254,760원
부가급여 (만 18~64세)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8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70,000원 - 차상위초과: 20,000원
부가급여 (만 65세 이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8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70,000원 - 차상위초과 : 40,000원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② 장애수당(종전 3급~6급 장애인)

장애수당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계층)	월 4만원 지급
장애수당(보장시설)	월 2만원 지급(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월 4만원) 지급)

③ 장애아동수당(1급~6급 장애아동) : 월 2~20만원 지급

구 분	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중복장애)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종전 3~6급장애)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3. 신청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 자산조사 - 장애정도재심사 ▶ 결과통보 및 지급 -매월 20일 연금지급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관련 신청서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

4. 문 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애인 지원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1. 대상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모든 등록장애인('19.7월부터 신청자격 확대)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은 신청 불가
  -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2. 활동지원급여 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도,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3. 활동지원 급여 종류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이상/미만)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등급	465점 -	480시간	6,221,000원	9등급	225점 -255점	240시간	3,111,000원
2등급	435점 - 465점	450시간	5,832,000원	10등급	195점-225점	210시간	2,722,000원
3등급	405점- 435점	420시간	5,444,000원	11등급	165점-195점	180시간	2,333,000원
4등급	375점 - 405점	390시간	5,055,000원	12등급	135점-165점	150시간	1,944,000원
5등급	345점- 375점	360시간	4,666,000원	13등급	105점-135점	120시간	1,556,000원
6등급	315점- 345점	330시간	4,277,000원	14등급	75점-105점	90시간	1,167,000원
7등급	285점- 315점	300시간	3,888,000원	15등급	42점-75점	60시간	778,000원
8등급	255점-285점	270시간	3,500,000원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5시간	584,000원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내용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037,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26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260,000원

- 출산, 자립 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4. 본인부담금 내용

구 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
기본급여	면제	월 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 차등부담
특별급여	면제		

5. 신청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청 (통장, 건강보험증) ▶ 국민연금공단 직원 방문조사 ▶ 활동지원등급 판정 ▶ 결과통보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 **구비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6.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1355)

X. 특수상황에 따른 지원제도

- 석면피해구제제도
- 원폭피해자 지원제도
-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특수상황에 따른 지원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1. 내 용

- 석면광산 및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

2. 문 의

-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보건관리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팀 (☎ 1833-7690) 또는 https://www.env-relief.or.kr

원폭피해자 지원제도

1. 내 용

-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대상자나 유족에게 진료비, 원호수당, 진료보조비, 장제비, 종합건강검진 등을 지원

2. 문 의

- 대한적십사자 고객센터(☎ 02-3705-3791~3)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1. 내 용

- 보훈 대상자에게 보훈급여, 교육·의료·대부·생업지원 및 보훈복지서비스 등 지원 (대상자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2. 문 의

- 관할 보훈처(☎ 1577-0606)

XI. 기타 지원제도

-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 기초연금
-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자체별 상이)
- 119 안심콜 서비스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돌봄휴직/휴가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기타 지원제도]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암환자 중 연말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분에게
의료비를 공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근로자) & 종합소득세신고(사업자) 신청가능

1. 신청절차

- 연말 원무과에 비치된「중증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작성하여 의료진 확인 후 직장 또는 세무서 제출

2. 문 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기타 지원제도]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1.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 거주([주민등록번]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2. 선정기준

- 2020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단,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 직역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2만 5,000원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수령 가능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과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6,000원(저소득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4.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

[기타 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1. 대상자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정도 결정
-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상 악화 시 재신청 가능
-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분에게 장애연금을 지원
- 지원대상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제도와는 다른 제도임
(장애인 등록증의 근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와는 구분됨)

2. 지원금액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됨

3. 신청방법 (평일 기준 21일 이내)

① 신청인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청구

②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 접수

③ 구비서류

CHECK CHECK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병원서식. 담당 의사에게 발급요청. 발급비용 : 3,000원),
장애발생 경위서(공단서식), 장애진단자료(진료기록지, X-ray, CT, MRI 필름 등),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이 외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지사 내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내 완료(평일기준, 자료보완 및 직접 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은 심사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4. 문 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355)

[기타 지원제도]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1. 생활지원

-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취약·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 지원(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 어촌 가사도우미
  -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하도록 지원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수협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 ☎ 02-2240-3338)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개선, 환경성질환자(어린이) 진료지원 서비스 제공(환경부 ☎ 044-201-6758)

-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 지원(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 ☎ 02-2080-5566)

- 사랑의 그린PC 보급
  -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를 무상 보급하여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 해소(사랑의 그린PC ☎ 1588-2670)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가 사회에 잘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2. 건강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함.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 지원

    ※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분의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저소득다문화가족 치료비지원사업
  -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고용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4. 교육지원

- 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 02-330-2831~3)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 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02-733-7587)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752)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기타 지원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자체별 상이)

1.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의거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요양등급 1~2급 등록자)
- 임신부, 국가유공자 1-3급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이용요금

- 관내 : 1,500원/편도 1회당
- 관외 : 100원/1km당

3. 이용절차

- 고객 → 전화(☎ 1577-5909) 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 상담실 → 배차 → 차량이동 → 고객

4. 운행일(시간)

-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행

5.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
- 당일 즉시콜제 : 이용시간 기준 2시간이내 신청

  ※ 전화는 24시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예약은 06시 ~ 22시까지 가능

  ※ 각 시군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검색하면 전화번호 안내 받을 수 있음

[기타 지원제도]

119 안심콜 서비스

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개인정보(질병정보, 상황정보 등)를 사전에 등록하여 일반 또는 휴대전화로 119 신고와 동시에 상황실과 출동대가 신고자의 정보를 확인, 신속하고 적절하게 긴급대응하고 보호자 등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고객 맞춤형 119 안전복지서비스

1. 대상자

- 장애가 있는 분, 만성질환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 특히 질병의 환자,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 위급한 상황 시 119 도움이 필요한 분

2.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가능
- 자신의 장애와 질병,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아래 119 안전신고센터에 입력(신청)하면 119 신고 시, 구급대가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등록 홈페이지 :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119안전신고센터 http://u119.nema.go.kr
  -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안심콜'로 검색
- 본인이 직접 등록이 어려우면 전화번호 문의(☎ 주간 02-6359-0119 또는 129)

3. 119 안심콜 서비스의 장점

- 언제 어디서나 지역과 관계없이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119 서비스 이용 시 보호자 등 관계자에게 안내
- 신속한 맞춤형 119 서비스로 구명률이 높아짐
- 119 안심콜 서비스는 무료

4. 119 안심콜 서비스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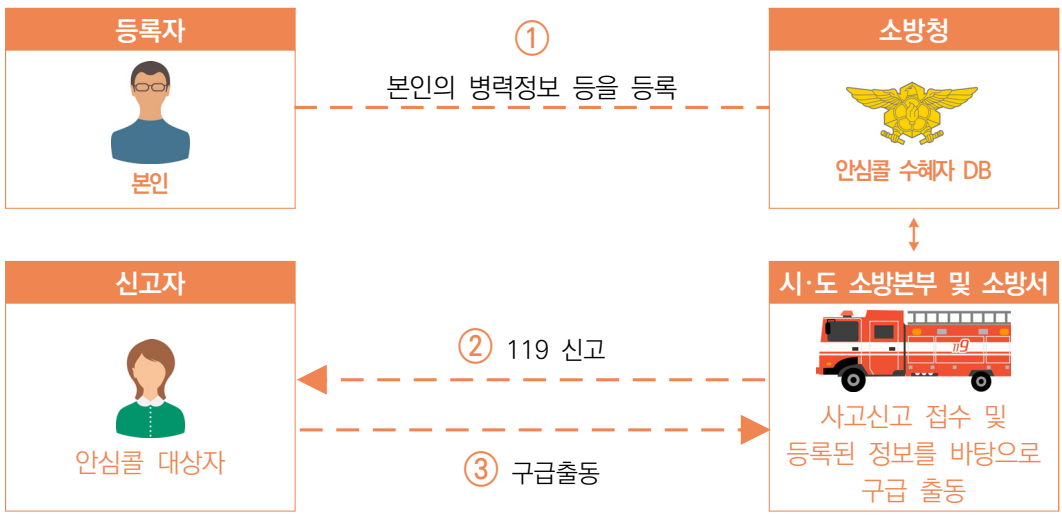

[기타 지원제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대상자

- 가족·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가족,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공식적 서비스 또한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능력(ADL) 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출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독거노인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2. 지원내용

-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 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기타 지원제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1. 대상자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선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보건소 치매진단검사 의뢰자)에 처해 있을 경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방문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
  -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다음의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
  - 1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1등급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 독거가구 :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 취약가구 :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 2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 활동지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 장애인(1~3급)

3. 지원내용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4. 신청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시행

5. 문 의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02-6360-6170)

[기타 지원제도]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

2.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 노인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3. 지원내용

- 동절기(11월~5월)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급함. 지원액은 가구 수에 따라 약 12만원 가량 차등 지급
- 전자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

4. 문 의

-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기타 지원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1. 대상자

- 가정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이용

2. 주요사업

가족돌봄나눔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남성대상교육
가족상담	이혼 전/후 가족상담, 부모자녀, 재혼가족, 고부갈등상담 등
가족문화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가족여가 프로그램, 지역참여 및 나눔행사, 건강가정 관련 캠페인 등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군인가족 등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협의체 연계 등

3. 비용

- 프로그램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진행

4. 문 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문의 및 개별센터 전화, 홈페이지 신청

[기타 지원제도]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가족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 중단을 방지하지 위한 휴직 제도입니다.

1. 제도 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무급) 제도.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사용 기간

- 연 90일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함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

3.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기타 지원제도]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1. 지원내용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기타 지원제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사유

-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본인 건강** :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학업**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가족돌봄휴가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④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해당 근로시간 단축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단축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3. 기간

-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임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이 가능

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②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③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4.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기타 지원제도]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암생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평가해보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체·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복지 관련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대상자

- 암생존자: 암 진단을 받고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사람
  암 진단 후 완치를 목적으로 주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마친 암환자와 그 가족
  - 재발이나 전이 위험이 낮은 암생존자의 참여를 권장
  - 제외 대상:
    ①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의 암치료 중인 암환자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대상 암환자
    ③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경우 급성 합병증의 문제가 해결된 후 참여 가능

2. 지원내용

- 체험형 자기관리 프로그램
  - 암 치료로 생긴 신체 증상을 스스로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동, 영양·식생활관리, 수면위생교육, 이완훈련 등
- 심리지지 프로그램
  - 암생존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정신적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지 및 관련된 정보제공 등
- 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소아청소년 대상)
  - 학교 복귀 준비부터 학교 복귀까지의 과정을 지지하며,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가족, 교사와 또래 등을 대상으로 암생존자 이해증진 교육 등

- 그 밖의 프로그램
  - 권역센터마다 신체·정신·사회적 문제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상세 내용은 가까운 권역센터에 문의
- 암생존자 클리닉
  - 우울, 불안, 불면, 림프부종 등 신체·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별도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음)

3.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기관

권역	연락처 및 주소
강원	033-258-9038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병원
경기	031-219-413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병원
경남*	055-750-9036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병원
광주전남	061-379-8118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화순전남대병원
대구경북	053-200-3561 대구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병원
대전	042-280-7419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병원
부산	051-240-6876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병원
울산	052-250-8190 울산 동구 전하1동 방어진순환도로 877 울산대병원
인천	032-460-8487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83 가천대길병원
전북	063-250-1947 전북 전주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병원
제주*	064-717-2332 제주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병원
충북	043-269-7688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6 충북대병원
국립암센터*	031-920-261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4. 문 의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 1577-8899(국가암정보센터) 또는
  홈페이지: www.cancer.go.kr/survivor

XII. 말기암 환자를 위한 제도

-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암 환자를 위한 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연명의료계획서란

- 연명의료계획서란?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남겨두는 문서
-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해당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담당 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판단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임종과정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만으로 가능)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 정보포털(www.lst.go.kr)에서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 가능
- 이미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더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

3. 용어 정의

- **말기 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담당 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한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 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한 환자
- **연명의료의 범위**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 밖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의학적 시술

4. 문 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www.lst.go.kr

[말기암 환자를 위한 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시면,
통증 등 신체적 고통과 심리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란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 팀이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사회/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2. 대상자

-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3.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 완화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및 자원 연계
- 환자와 가족 교육(환자 돌봄 방법, 증상 조절 등)
- 음악·미술 등 요법 및 돌봄행사 프로그램 운영
-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4. 유형

서비스유형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가정형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자문형	일반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자문 형태로 서비스 제공

※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사업 운영기관 정보는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hospice.go.kr) 확인

5. 문 의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http://hospice.go.kr (☎ 1811-8080)

국가지원제도 안내서 자료 출처

참고 자료	발행기관	기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4호 (2017.12.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호 (2018. 1.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 (2018.1.1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7호 (2018.1.3.)
2020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공식 사이트	-
2020 정신건강사업 안내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공식 사이트	-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20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
20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020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
2020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20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참고 자료	발행기관	기타
2020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2020 긴급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2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
202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질병관리본부	-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2020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보건복지부	-
2020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자료집	중앙자살예방센터	-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2019년 12월 발행)	고용노동부	
석면피해구제시스템 (https://www.adrc.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or.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고용노동부	
금연길라잡이 공식사이트 (http://www.nosmokeguide.go.kr)	보건복지부	-